

【축산정책】

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

① 가축계열화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
 - 2008년 현재 양돈 20%, 양계 74%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2005~2008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양돈 36%, 양계 83%까지 확대

성과지표	2010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선출 시기	측정방식
		2007	2008	2009		
가축계열화율						
- 양돈	22	18	20		2011.2	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 / 총 도축두수 × 100
- 양계	80	73	74			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7년까지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이후
합 계	279,688	26,000	20,000	20,000	340,000
용 자	279,688	26,000	20,000	20,000	340,000
· 양 돈	129,644	13,000	10,000	10,000	170,000
· 가금 (양계 및 오리)	150,044	13,000	10,000	10,000	170,000

II.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가축계열화 사업자(계열화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-189, 2009년 8월 24일)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
- 제한사항
 -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실적이 돼지는 30천두, 닭은 500천수, 오리는 200천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 -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-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 등)은 농림수



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(단, 시설비는 지원가능)

• 우선지원 요건

- 완전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·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-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

3. 지원대상

- 돼지, 닭(육계, 산란계),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, 부분 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

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·사육시설, 가공시설, 유통시설·장비,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기금융자율·자부담율, 융자기간, 금리 등은 별표 1(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) 참조
- 사업추진 기간내에 「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」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
— 닭·오리 :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
- 사업추진규모
 - 오 리 : 연간 오리 생산·처리능력 1,000천수(농가는 15호) 이상

별표 1

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 분	지 원 범 위	지 원 조 건	비 고
1. 계열주체사육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열주체가 운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4%(농·축협등 생산자단체 3%) ※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	
2. 계열농가생산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의 70%이내 - 연 3%(변동이 있을 수 있음) 	지원조건은 농업종합 자금지원사업과 동일
3. 가공시설(육가공 공장, 난가공장, 계란집하장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」사업과 동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※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	
4. 유통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·시설·장비 등 	"	
5. 계열화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•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4%(농·축협등 생산자단체 3%) ※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2년이내 상환 	

*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별표 2**계열화사업 추진(계획, 실적) 보고****1. 현 황**

- 지정년도 :
- 축 종 :
- 상 호 :
- 대표자성명 :
- 주 소 :

2. 사업장 건설(계획, 실적)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완료 예정일	총투자계획			2009년 계획			2009년 실적		
			합계	융자	자담	합계	융자	자담	합계	융자	자담
계열주체사육시설 ()											
계열농가생산시설											
축분처리시설											
도축장											
육가공공장											
계란집하장											
판매장											
저장시설											

주) •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
 •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()에는 「별표1」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

3. 계열화사업 추진(계획, 실적)

구 분		2009년 계획		실적			
		사업량	금액	사업량	금액	사업량	금액
계열농가 확 보	호 수						
	총사육규모						
자재공급	자 축						
	사 료						
생 산	계열생산						
	외부구매						
	기 타						
	도축량						
판 매	자체유통						
	상인유통						
	기 타						
	수 출						
	합 계						

※ 협의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

별표 3

(양돈, 양계, 오리)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

상호					지정 연도		
대표자					전화		
					팩스		
주소							
직영·위탁·계약농가 상시사육	GGP모돈(원종계)		F1모돈(종계)		비육돈(실용계)		계
	두(천수)						
계열농가에 종돈·종계공급 (연간)	직영·계열 자체생산(A)	계열업체가 공동구 매·공급(OEM 등)	계열농가가 개별구입		계(B)	자체공급율 (A/B)	
	두(천수)						
생산 (연간)	구분	직영 (C)	위탁 (D)	계약	일반 구매	계 (E)	자체생산율 (C+D)/E
	호수(호)						
	두수(두)						
사료공급 (연간)	직영·계열업체 생산(F)	공동구매 (OEM 등)	농가 개별구입		계(G)	자체공급율 (F/G)	
	톤						
도축 (연간)	자체시설(H)		외부위탁		계(I)	자체도축율 (H/I)	
	두(천수)		※생산두수(E)와 같아야 함				
판매 (연간)	자체유통 (J)	상인유통	수출 (K)	2차가공 (L)	기타	계(M)	자체판매율 (J+K+L/M)
	톤						%
향후 계획	연도	계열 농가수	생산량	자체생산율	자체 사료생산율	자체 시설 도축율	자체 판매율
	2009년	호	두/년	%	%	%	%
	2010년						
	2011년						

※직영 :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

※위탁 : 계열업체가 자축소유,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

※계약 : 농가가 자축소유, 계열업체와 농기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